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태도 및 동기와 입양사례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영호*·신동면**

요약

이 연구에서는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을 추진 중인 예비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양유형, 입양태도, 입양 저해요인, 입양동기, 입양사례 경험 등을 설문조사 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정을 통해 입양유형에 따른 입양동기의 차이와 입양사례 경험에 따른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응답자 중 77.9%는 최초 입양이었으며, 그 중 유자녀 입양이 22.1%, 무자녀 입양이 55.8%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22.1%가 재 입양이었다. 둘째, 입양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며, 자신이 입양 제안자이며 주도적으로 입양을 추진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80.5%가 공개 입양을, 73.2%가 여아 입양을 선호하였다. 넷째, 입양결정 시 저해요인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선입견, 자녀의 부적응,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우려감을 꼽고 있다. 다섯째, 자신의 입양동기를 불임과 이타심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자녀 입양의 경우 입양동기로 이타심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여섯째, 응답자의 55.8%가 직계 및 확대 가족 또는 주변 이웃 및 친구 가족에서 입양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여 입양에 대한 강한 노출 경험을 지니며, 직계 및 확대가족의 입양사례가 있는 예비입양부모들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정부는 입양부모의 고 연령을 고려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6세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대학교 학자금과 주택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입양동기에서 이타심 요인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입양을 입양부모의 이타적 행동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입양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과정을 강화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끝으로, 긍정적인 입양사례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TV 대중매체 등을 통한 긍정적인 입양사례 발굴과 소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주제어: 입양, 국내입양, 입양 동기, 입양 태도, 입양 저해요인, 예비입양부모.

* 제1저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ppk0309@naver.com)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dmshin@khu.ac.kr)

1.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서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를 두고 모든 아동이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매년 수 천 명의 요보호 아동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5,226명의 요보호 아동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7).¹⁾ 이들 중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이 856명, 유기(버려진) 아동이 264명으로 전체 요보호 아동들 중에서 21%를 차지한다.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과 유기 아동의 대다수는 3세 미만의 영아기 아동이다. 영아기는 주 양육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친생모와 분리되는 돌봄의 방임만이 아니라 아동에게 생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 분리가 장기화되면 영아기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Kadushin, 1980). 따라서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과 유기 아동과 같이 영아기 요보호 아동을 위해서는 조기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과 유기 아동을 위해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시설보호와 가정위탁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족과 안정된 양육 환경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보호에 그친다. 특히, 가족위탁의 서비스 수혜자 현황을 보면, 영아기 아동의 수가 많지 않고 대다수는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이다.²⁾ 따라서,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과 유기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영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 관점에서 입양은 친생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요보호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이민영, 2003; 배태순, 2013). 그러나 입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외 입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16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 2016년 연도별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입양아동은 2,464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역대 최저 인원인 880명이 입양되어 2011년 대비 64%가 감소하였다. 입양아동을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으로 구분하면, 국내입양 아동은 2011년 1,452명에서 2016년 546명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해외입양 아동도 916명에서 334명으로 감소하였다.

국내·외 입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1) 2017년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에서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으로 유기, 미혼모·부,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빈곤 및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을 꼽고 있다.

2)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가정위탁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가정위탁 사례 수는 12,896명이었는데, 이들 중 3세 미만의 영아기 아동은 121명에 불과하며, 17세 이상 청소년이 7,025명으로 54%에 달하였다.

것은 아니다. 한국입양홍보회(MPAK)가 2000년에 설립되어 국내입양을 홍보·장려하기 위해 공개 입양 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12년 ‘입양특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공개입양과 국내입양우선이 법제화 되면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입양홍보회는 입양부모의 공개입양을 ‘배로 낳은 출산’이 아닌 ‘창의적인 출산’ 또는 ‘가슴으로 낳은 출산’으로 묘사하고 아름다운 선행으로 홍보하며, 공개입양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이설아, 2013). 공개입양이 확산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양(이하 유자녀 입양)과 입양가정에서 추가로 입양하는(이하 재 입양) 가정도 늘고 있다. 또한 공개입양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 이웃이 입양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입양사례 경험이 늘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 수는 입양아동 수보다 여전히 훨씬 많고,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를 통해 한시적 보호를 받는 요보호 아동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선행연구들(고영희, 2005; 진경재, 2006; 홍순혜 외, 2007; 이갑숙 외, 2008; 조혜정, 2011; 정용주, 2011)은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제도의 영향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고 입양을 감추려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 연구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밝히고, 향후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입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실제로 아이를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태도, 입양동기, 입양 경험 등을 조사한 실증 연구들은 흔치 않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비밀입양 위주로 국내입양을 실시하여 입양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입양가족을 만나기 쉽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2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공개입양과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공개입양과 국내입양 우선을 원칙으로 입양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입양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을 진행 중인 예비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양유형, 입양태도, 입양 저해요인, 입양동기, 입양사례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입양유형별로 입양동기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사례 경험에 따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친생자녀가 있는 가족의 입양이 늘어나고, 공개입양원칙으로 인해 직계 및 확대가족 뿐 아니라 주변 이웃과 친구의 입양사례 경험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입양동기의 다변화와 입양사례 경험이 입양부모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입양 촉진을 위한 입양정책 설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입양을 결정한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진행한 이 연구는 2013년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이후 비준을 준비 중인 정부가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입양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입양관련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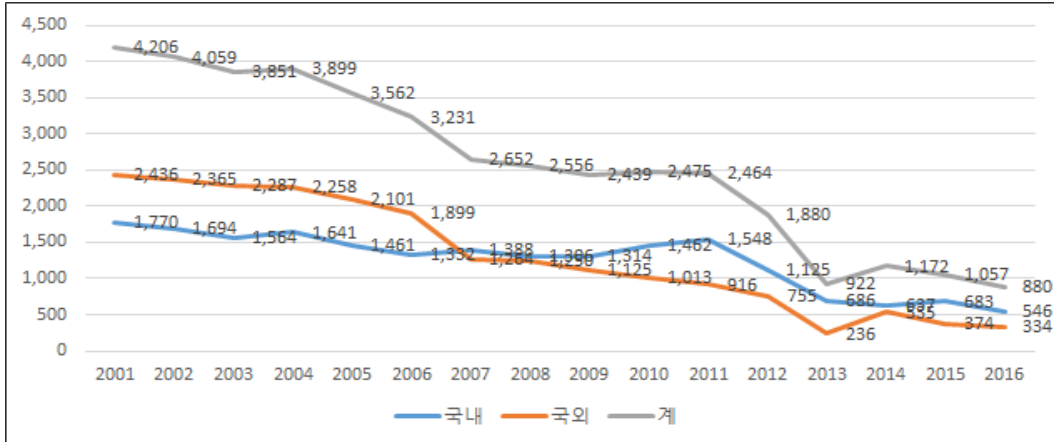
1) 한국의 입양실태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 혼혈아와 전쟁고아들을 국외로 입양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할 목적으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했고, 1976년 12월 31일에 ‘고아입양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여 ‘고아’라는 용어 대신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로 바뀌 고아뿐 아니라 미혼모 출산 아동과 유기 아동도 입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95년 1월 5일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국외입양은 2000년대 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외 입양아 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해 살펴보면, 1960년대 동안 국내 421명, 국외 728명이었던 것이 1970년대에는 국내 1,530명, 국외 4,825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80년대 동안 입양아동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연평균으로 매년 국내 2,650명, 국외 6,532명을 기록하였다(광주외국인복지센터, 2017). 국외입양아동 수가 연간 6천여 명이 넘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아동수출국이라고 불린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부끄러운 일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국외입양 아동 수가 점차 감소하였다.³⁾

3) 1990년 정부는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기아(棄兒)의 경우 국외 입양을 금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1995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시설보호 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을 적극 추진하되 국내 입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 입양을 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입양가정에 주택용자 및 교육비·의료비·생활비 등을 보조해 주도록 하였다(광주외국인복지센터, 2017, <http://cafe.daum.net/js1920>).

[그림 1] 한국의 국내·외 입양 현황 (2001-2016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08&stts_cd=270801&freq=Y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외 입양아동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1980년대 연평균 6,500여 명에 달하였던 국외입양은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 2,436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2016년에는 334명으로 줄었다. 국내입양은 1980년대 연평균 2,600여 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 1,770명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546명으로 줄었다. [그림 1]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 아동 수가 국외입양 아동 수를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최근 2016년에는 전체 입양아동에서 국내입양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하였다. 최근 국내·외 입양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입양대상인 요보호 아동, 특히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 수는 2011년 2,515명에서 2016년 85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⁴⁾ 그리고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공개입양과 국내 입양 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입양부모의 자격심사가 엄격해지고, 미혼모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입양아동 수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물론,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입양아동 수가 줄어든 것이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과 유기 아동을 합산한 요보호 아동 규모는 입양아동 규모보

4) 유기 아동 수는 2011년 한 해 동안 218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264명으로 증가하였다.

5) 다른 한편으로,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꺼리고 입양부모들이 법원의 입양허가제 절차를 기피하여 불법 입양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입양아동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입양아동 수가 과소 집계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다 여전히 많다. 예컨대, 2016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과 유기 아동을 합한 규모가 1,100여명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국내·외 입양아동 수 880명보다 더 많다. 더욱이, 요보호 아동 수는 매년 발생하는 숫자지만 입양아동 수는 누적된 요보호 아동들 중에서 당해 연도에 입양된 아동의 숫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양되지 못한 요보호 아동이 상당 규모로 존재한다. 결국, 수많은 요보호 아동들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과 안정된 양육환경을 영구적으로 제공 받지 못하고 가정위탁과 아동시설을 통해 한시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입양관련 선행연구

한국에서 국내·외 입양의 역사가 60여년이 넘었으나 입양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입양 연구는 1974년 허남순의 ‘국내입양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입양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지만(이기연, 1996; 양점도·김호연, 1998; 변용찬 외, 1999), 입양을 감추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입양부모에 관한 실증적 조사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2000년 한국입양홍보회가 설립되어 민간차원에서 공개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면서 공개입양을 입양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김경아, 2002; 김은나, 2004; 정순란, 2005). 그리고 공개입양이 늘면서 공개입양한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증연구들이 발표되었다(이현정, 2002; 윤현선, 2002; 김영화, 2003; 권지성, 2003, 2005; 김의남, 2005; 김향은, 2006; 구미향, 2006; 박경련, 2007; 권지성 외, 2010; 박미정, 2009; 정익중 외, 2011; 안재진 외, 2015). 이들은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양적 연구 또는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 질적 연구를 통해 입양태도, 입양가족의 적응,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입양만족도, 가족 갈등 등을 탐색적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이들과 달리, 안재진(2008)은 국내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공개입양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기간이 길고, 입양모의 종교가 개신교이고, 농어촌에 거주하고, 친생자녀가 있고, 공개입양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우에 공개입양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외입양 아동에 관한 연구는 국내입양 아동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매우 드물었다. 다만, 국외입양 아동이 성년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뿌리 찾기를 진행하면서 시작된 모국방문을 계기로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정체성과 뿌리 찾기 등을 다룬 연구가 발표되었다(박인선, 1994; 1997; 이미선, 2002; 고혜연, 2013; 위여경, 2011; 권지성·안재진, 2010; 김미숙 외 2013). 특히, 김미숙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국외입양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서비스 요구 조사에 기초하여 국외입양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 국외입양인에 대한 국내 일반 대중의 인식, 특히 사회적 편견을 조사한 연구(이성희, 2006)와 한국 국외입양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을 다룬 연구(김재민, 2016), 친생자녀를 국외입양 보낸 친부모의 생애사 연구(강태인, 2014) 등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국외입양 아동의 양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양에 관한 사회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한종민, 2003; 서경숙, 2003; 고영희, 2005; 서란숙, 2007; 홍순혜·박미정, 2007; 이갑숙 외, 2008; 정용주 외, 2011; 조혜정, 2011). 일반 국민들은 입양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며, 입양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국내입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라고 인식하였다.

한편, 입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외국에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입양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Welti & Malm(2010)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입양의사 조사를 통해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입양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배우자가 입양가정에서 성장하였거나 입양되었을 경우 입양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 홍순혜·박미정(2007)은 국민의 입양 인식과 입양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입양사례 경험이 입양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10대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변에 아동을 입양한 사람이 있을수록, 입양을 바람직한 보호양육 형태로 간주할수록,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일수록, 국내입양을 선호할수록 입양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주위에 입양가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입양사례 경험을 조사하였다(한종민, 2003; 서경숙, 2003; 고영희, 2005; 서란숙, 2007). 일반 국민, 대학생,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입양사례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지방도시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한종민, 2003; 서경숙, 2003; 고영희, 2005),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입양사례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서란숙, 2007; 홍순혜·박미정, 2007).⁶⁾

6) 청주시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종민(2003)의 연구에서 입양한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42.3%였고, 전라북도 주민의 입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서경숙(2003)의 연구에서 입양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6.5% 이었고, 불교신도의 입양의식을 조사한 고영희(2005)의 연구에서 입양한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3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소재 5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입양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를 수행한 서란숙(2007)의 연구에서 입양한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14.4%였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 ‘국민의 입양인식과 입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홍순혜·박미정(2007)의 연구에서 입양한 사람

그런데 개인의 입양사례 경험은 성장과정에서 입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입양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즉, 신문, 영화, 라디오, TV 등에 나오는 입양가족과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입양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해린 외(2012)는 국민들이 즐겨보는 TV 드라마에서 단골 주제로 다루어지는 입양과 출생의 비밀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입양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는 다양한 학습을 통해 형성되며, 특히 TV를 통한 입양의 부정적 이미지 묘사는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방송매체에 나오는 입양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는 입양인식과 입양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입양사례 경험이 개인의 입양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입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입양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입양인식과 입양의사를 살펴보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부모 또는 입양을 결정한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태도와 입양동기 등을 살펴보는 실증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들의 입양의사가 곧바로 입양 결정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입양을 결정한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태도, 입양동기, 입양사례 경험 등을 조사한 실증연구는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입양을 결정한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유형, 입양태도, 입양결정 저해요인, 입양동기, 입양사례 경험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입양유형별로 입양동기가 서로 다른지, 그리고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사례 경험에 따라 입양결정에 미친 영향이 다른지를 아래와 같은 가설의 검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 입양유형에 따라 입양동기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입양사례 경험유형에 따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를 것이다.

3. 조사 설계

1)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신청하고 입양기관에 집합하여 교육을 이수중인 예비입양부

이 있다는 비율은 18.8%였다.

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questionnaire survey)를 실시하였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관련 제도가 바뀐 상황에 입양부모들의 입양유형, 입양태도, 입양저해요인, 입양동기, 입양사례 경험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여 입양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조사가 적절한 조사방법이 될 수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전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양 전 부모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서울시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형 입양기관에서 입양 전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설문지 조사는 2015년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⁷⁾ 입양 전 부모교육을 실시한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성가정입양원에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설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연구 취지에 동의한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입양 전 부모교육에 참석한 예비입양부모에게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기관에서 53부와 25부로, 총 78부⁸⁾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최종 수거된 78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되어 설문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총 77부를 통계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의 대표적 입양기관으로 입양 전 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입양기관들은 비정기적으로 입양 전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⁹⁾ 그러므로 예비입양부모들의 상당수가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 전 부모교육을 이수한다. 평균 교육 대상자는 매회 30명 내외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홀트아동복지회는 총 6회 교육을 시행하였고, 동방사회복지회도 6회 교육을 시행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입양 아동 수가 총 546명이었고, 입양이 완료되기 까지 평균 4~6개월의 법원 심사와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입양 전 부모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전체 예비입양부모수의 50%를 넘는다. 따라서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의 도움으로 수집한 통계분석에 활용된 77명의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예비입양부모 77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다. 성별을 보면, 77명 중 여성이 51.9%(40명), 남성이 48.1%(37명)로 나타났다. 이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30대가 40.3%, 40대가 50.6%로, 3·40대가 전체 응답자의 90.9%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의 고

7)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는 박영호(2016)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수집된 자료임을 밝힌다.

8)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진행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의 평균 참여 수는 30명 내외이나 전반기 메르스 감염상태로 교육이 취소되어 평소 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9) 2016년 전국적으로 10개의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시행하며, 이들 중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만 국외입양을 시행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위 세 개 입양기관과 함께 성가정입양원과 한국사회복지회가 국내입양을 실시하며,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입양된 683명중에서 216명이 서울에서 입양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학력자가 65%로, 예비입양부모의 학력이 비교적 높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57.1%로 다수를 차지하여 타종교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23.4%였다. 예비입양부모의 월 평균소득은 450만 원 이상 26.0%, 250~350만 원 미만 24.7%, 150~250만 원 미만 19.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독신입양 1명을 제외한 76명이 기혼 상태였으며, 결혼기간은 6~10년차가 41.6%(32명)로 가장 많았고, 16년~20년차가 18.2%(14명), 11~15년이 14.3%(11명), 20년 이상 6.2%(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 중 5년 이하의 신혼부부도 18.4%(14명)에 달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 = 77

	문항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7	48.1
	여자	40	51.9
	합계	77	100.0
나이	25 ~ 30세	1	1.3
	31 ~ 40세	31	40.3
	41 ~ 50세	39	50.6
	51 ~ 60세	6	7.8
	합계	77	100.0
학력	고졸 이하	16	20.8
	전문대졸	11	14.3
	대졸	29	37.7
	대학원 이상	21	27.3
	합계	77	100.0
종교	기독교	44	57.1
	천주교	5	6.5
	불교	8	10.4
	무교	18	23.4
	기타	2	2.6
	합계	77	100.0
월소득	150만 원 이하	11	14.3
	150 ~ 250만 원 이하	15	19.5
	250 ~ 350만 원 이하	19	24.7
	350 ~ 450만 원 이하	12	15.6
	450만 원 이상	20	26.0
	합계	77	100.0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계속)

N = 77

문항		빈도	백분율(%)
결혼 유형	기혼	76	98.7
	독신	1	1.3
	합계	77	100.0
결혼 기간	5년 이하	14	18.4
	6 ~ 10년	32	41.6
	11 ~ 15년	11	14.3
	16 ~ 20년	14	18.2
	20년 이상	5	6.5
	독신 입양	1	1.3
	합계	77	100.0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입양유형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개입양을 원칙으로 삼기 이전에 한국에서 입양은 비밀입양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개입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공개입양 개념이 외국과 다르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공개입양은 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협의에 기초하여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세 주체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Watson, 1988). 그러나 한국에서 공개입양은 입양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입양아동뿐 아니라 가족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공개입양이라고 한다(안재진, 2008).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개입양을 원칙으로 삼는 상황에서 입양유형은 입양부모의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무자녀 입양(난임)과 유자녀 입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입양 유형을 최초 입양과 재 입양으로 구분하여 입양을 처음 진행하는지 아니면 입양가정이 추가 입양을 통해 가족을 확대하는지 구분하였다. 최초 입양의 경우에는 유자녀 입양과 무자녀 입양으로 세분화 하였다. 재 입양의 경우에는 이미 입양한 자녀도 친자녀와 다름이 없으므로 친생자녀의 유/무에 따른 구분 없이 재 입양으로 보았다. 최근 국내입양은 유자녀 입양과 재 입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 입양은 정확한 통계가 없고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입양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재 입양에

관한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입양결정과 입양태도

입양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태도는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입양 이후의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예비입양부모들은 이미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을 진행하는 중이므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일반인의 입양에 대한 태도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 국민의 50% 가량이 입양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입양의사가 실제 입양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의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입양부모의 입양 결정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입양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 입양 결정시 주로 상의한 사람, 입양 결정시 중요 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예비입양부모들의 입양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입양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국내입양 대기 예비입양부모 대상” 설문지를 참고하여 선호하는 입양유형, 입양아동의 성별 선호, 입양아동 조건 등을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입양 아동의 뿌리 찾기(친생부모 찾기)항목을 추가하여 예비입양부모의 입양태도를 측정하였다.

(3) 입양 저해요인

입양 결정시 입양부모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여 입양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입양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확대가족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입양부모의 법적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입양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입양 아동이 제대로 적응할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입양 여부를 숙고하게 된다. 입양을 둘러싼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책임감이 커질수록 입양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실제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입양부모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입양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입양 저해요인을 입양 결정시 저해요인과 입양 종료 후 양육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4) 입양동기

입양부모의 입양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입양부모의 다양한 입양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자녀 불임입양(난임)과 유자녀 입양으로 구분하는 일반적 구분에 따라 입양동기의 하위요인을 불임, 이타심, 그리고 창의적 가정형성과 같은 일반 동기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특히, 친

생 자녀의 유/무는 입양부모의 심리적 상실감과 관계있는 요인으로, 입양유형에 따라 입양동기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차이비교를 시도한다. 설문 항목은 한국입양홍보회(m-pak) 연구소모임(입양연구회)에서 2014년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입양동기 설문조사의 문항을 차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예비입양부모의 다양한 입양동기를 측정하였다(설문내용은 표 6에 포함함).

(5) 입양사례 경험

입양사례 경험은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입양가정 또는 입양인을 접촉함으로써 입양에 대해 인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했는지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사례 경험을 분류하고 입양사례 경험 정도를 측정하였다. 확대가족 내의 입양가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주변 이웃 또는 친구에 입양가정이 존재하거나 입양인이 존재할 경우는 입양사례에 대한 직접적 경험으로 구분하여 강한 노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TV, 영상매체, 입양 안내책자, 인터넷 입양사이트 등을 통해 입양가정 또는 입양에 대해 인식한 경우는 입양사례에 대한 간접적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간접적 경험은 다양한 계층에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입양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약한 노출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사례 경험을 다중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입양사례 경험유형에 따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시도한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설문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예비입양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입양유형, 입양결정 및 입양태도, 입양 저해요인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입양부모의 입양동기에 관한 설문내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입양유형(유자녀입양과 무자녀입양)별로 입양동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사례 경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입양사례 경험유형에 따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1)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유형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유형은 [표 2]와 같이 최초 입양과 재 입양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최초 입양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유자녀 입양과 무자녀 입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처음으로 입양하는 무자녀 최초 입양이 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친생자녀가 있으나 아이를 처음으로 입양하는 유자녀 최초 입양은 22.1%에 달한다. 그리고 입양 가정에서 아이를 추가로 입양하는 재 입양의 경우도 22.1%에 달하여 유자녀 최초 입양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입양부모에게 입양자녀는 친생자녀와 다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 입양을 유자녀 입양에 포함할 수도 있다. 자녀의 유/무만 비교하였을 경우, 유자녀 입양은 34명(44.2%)으로 공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추계한 정부 통계와¹⁰⁾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재 입양의 경우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는 비공식 보고 외에 공식적 통계가 없어 재 입양 비율과 규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 2]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유형 구분

N = 77

문항		N	백분율(%)
입양 유형	최초입양	유자녀 입양	17 22.1%
		무자녀 입양	43 55.8%
	합 계		60 77.9%
	재 입양	17 22.1%	
	합 계		77 100%

2) 예비입양부모의 입양결정과 입양태도

먼저 예비입양부모들의 가정 내 입양결정 과정에서 입양을 최초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다. [표 3]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45.5%(35명)가 자신이 처음 입양을 제안하였다고 답하였고, 배우자가 제안한 경우는 36.4%(28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제안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11.7%(9명)로 나타났다.

10) 보건복지부 입양통계 (2007~2013) ‘유자녀, 무자녀 입양 현황’

둘째, 입양결정 과정에서 배우자 외에 주로 상의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4촌 이내 확대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4%(38명)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입양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직계 및 확대가족과 조율함을 알 수 있다. 친구들과 상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9%(13명), 주위 입양가족과 상의 15.6%(12명), 기타 14.3%(11명), 종교 단체 2.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호 입양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80.5%(62명)가 공개입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입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9.5%(15명)였다.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공개입양을 원칙으로 삼고 공개입양 가족사례와 공개입양의 유용성을 입양 전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공개입양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밀입양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입양 후 자녀의 뿌리 찾기 욕구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입양자녀가 뿌리 찾기 시 도움을 줄 것인지와 뿌리 찾기가 입양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자녀의 뿌리 찾기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26%(20명), ‘그렇다’ 48.1%(37명)로 나타나 전체응답자 중 약 75%가 자녀의 뿌리 찾기를 도울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뿌리 찾기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2.9%(33명)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9%(40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5.2%(4명)로 나타났다. 공개입양의 역사가 이제 17년에 불과한 한국 사회에서 뿌리 찾기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응답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자신의 의지라고 대답한 경우가 61.0%(47명)로 나타나 입양결정에서 자신의 결정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의지가 27.3%(21명), 종교적 신념이 9.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예비입양부모들이 선호하는 아동의 성별은 여아 72.7%(56명), 남아 24.7%(21명)로 나타나 여아 선호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아 선호 경향은 비단 입양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여아 선호 현상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에서 여아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남아 입양을 장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일곱째,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 결정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의 조건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8%(63명)가 ‘건강한 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조건 없음’ 13.0%(10명), ‘6개월 이하의 영·유아’ 10.4%, ‘입양부모와 혈액형 일치’ 6.5%, ‘입양부모와 생물학적 유사성’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원하는 응답자는 한건도 없었다.

[표 3] 예비입양부모의 입양결정과 입양에 대한 태도

N =77

문항		N	퍼센트(%)
입양을 최초 제안한 사람	본인	35	45.5
	배우자	28	36.4
	남편 쪽 직계	2	2.6
	아내 쪽 직계	3	3.9
	기타	9	11.7
	합계	77	100.0
입양 시 주로 상의한 사람	4촌 이내 확대가족	38	49.4
	친구	13	16.9
	주위 입양가족	12	15.6
	종교 단체	2	2.6
	기타	12	15.6
	합계	77	100.0
선호하는 입양형태	비밀 입양	15	19.5
	공개 입양	62	80.5
	합계	77	100.0
뿌리 찾기 시 도움 여부	매우 그렇다	20	26.0
	그렇다	37	48.1
	보통이다	18	23.4
	그렇지 않다	1	1.3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합계	77	100.0
뿌리 찾기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부정적 영향 기대	4	5.2
	긍정적 영향 기대	33	42.9
	잘 모르겠다.	40	51.9
	합계	77	100.0
입양 결정시 중요한 요인	본인 의지	47	61.0
	배우자 의지	21	27.3
	종교적 신념	7	9.1
	직계가족의 지지	1	1.3
	기타	1	1.3
	합계	77	100.0

[표 3] 예비입양부모의 입양결정과 입양에 대한 태도 (표 계속)

N =77

문항		N	퍼센트(%)
입양 아동의 성별 선호	남아	21	27.3
	여아	56	72.7
	합 계	77	100.0
입양 결정시 아동 조건*	건강한 아이	63	70.8%
	장애아동	-	0%
	양부모와 혈액형 일치	5	5.6%
	생부 생모 배경	1	1.1%
	양부모와 생물학적 유사성	2	2.2%
	6개월 이내 영·유아	8	8.9%
	조건 없음	10	11.2%
	기타	-	0%

주: * 단일응답이나 복수 응답이 발생되어 각 문항을 응답과 미 응답으로 이분변수로 처리한 후 응답수로 통계분석 하였다.

3) 예비입양부모의 입양결정 저해요인

입양부모가 입양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저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예비입양부모들이 입양결정 과정에서 느끼는 입양 저해요인으로 ‘사회적 편견’ 41.6%(32명)을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불명확성’ 37.7%(29명), ‘아동의 부적응 우려’ 33.8%(26명), ‘입양결정 시 확대가족의 반대’ 19.5%(15명), ‘경제적 여건에 대한 우려’ 9.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과 자녀양육에 대한 우려가 입양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입양부모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입양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입양 법적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입양 결정 시 저해요인

N=77		
항목	N	각 항목 응답 퍼센트(%)
배우자의 반대	3	3.9
확대가족 반대	15	19.5
경제적인 여건	7	9.1
아동 부적응 우려	26	33.8
사회적 편견	32	41.6
법적 기준 미달	4	5.2
부모역할에 대한 불명확성	29	37.7
기타	4	5.2

주: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 결정 시 저해요인을 묻는 질문은 복수 답변으로 1순위와 2순위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설문과정을 통제하기 어려워 2순위 응답에 대한 결측값이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순위 구분 없이 각 문항을 응답과 미 응답으로 이분변수로 처리한 후 통계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입양과정이 종료된 후에 예비입양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우려되는 내용을 질문하였다. [표 5]을 보면,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 후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자녀의 건강’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66.2%(51명)가 자녀의 건강을 가장 우려하였으며, ‘입양 후 친부모의 출현’ 9.1%, ‘자녀의 유전요인으로 인한 문제’ 6.5%, ‘신체적 장애 발생’ 5.2%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유전적 문제와 신체적 장애를 건강에 포함시키면, 입양아동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77.9%로 가장 컸다.

[표 5] 입양 후 자녀양육에서 우려하는 점

N = 77			
항목	N	퍼센트(%)	
입양과정 종료 후 우려되는 점	건강	52	67.5
	입양 후 친부모 출현	7	9.1
	신체적 장애	4	5.2
	유전적 요인	5	6.5
	출생 배경	1	1.3
	기타	8	10.4
	합계	77	100.0

4) 입양동기

[표 6]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동기는 불임, 이타심, 창의적 가족으

로 하위요인을 묶을 수 있다. 하위요인별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로 산출한 결과, 불임요인 0.801, 이타심요인 0.826로 통계학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으나, 창의적 가족 요인은 0.552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입양 동기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기술통계

N = 76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불임 요인	q2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76	1.80	.952	.801
	q3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가계 계승 등의) 압력 때문에	76	1.67	.915	
	q4	자녀가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76	2.30	1.222	
	q6	불임관련 의료적 시술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76	2.66	1.613	
	q9	불임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서	76	1.93	1.204	
합계			76	2.07		
이타심 요인	q10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가정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76	3.62	1.107	.826
	q11	종교적 믿음,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76	2.99	1.501	
	q12	사회 구성원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76	3.41	1.157	
	q13	의미 있는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76	3.83	.985	
	q18	낳는 것 보다 보호아동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76	3.11	1.250	
합계			76	3.39		
창의적 가족 요인	q16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76	3.82	1.067	.552
	q19	입양은 가족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76	3.96	.958	
합계			76	3.888		
기타 요인*	q1	부모가 되어보고 싶었지만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76	3.21	1.543	
	q5	자녀가 있어야 가족이 완성되는 느낌이어서	76	3.03	1.326	
	q7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76	1.41	.677	
	q8	배우자가 입양을 간절하게 원했다	76	3.08	1.152	
	q14	매스컴을 통한 입양가족의 홍보 광고 또는 입양 홍보물을 보고	76	2.45	1.124	
	q15	위탁부모활동 또는 보육원 자원봉사 활동 중 만난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76	1.86	1.128	
	q17	주위 입양부모들을 보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6	2.58	1.123	
	q20	현재 있는 자녀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기 위해	76	2.42	1.534	
	q21	노후를 생각할 때 외로울 것 같아서	76	2.61	1.223	

주: * 예비입양부모들의 다양한 입양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입양동기 항목을 크게 불임, 이타심, 일반동기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나 설문 후 요인분석을 통해 이타심, 불임, 창의적 가족 3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항목은 기타항목으로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입양동기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표 6]에서는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동기를 불임, 이타심, 창의적 가정,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예비입양부모가 인식하는 입양동기 가운데 불임요인은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2.074점으로 보통 미만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들을 보면, ‘불임관련 의료적 시술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가 평균 2.66점, ‘자녀가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이 평균 2.30점으로 불임 동기와 관련된 타 문항들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 계승의 부담’에 대한 입양부모의 인식은 평균 1.67점으로 나타나 과거 입양이 가계 계승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입양은 가계 계승의 욕구보다 부모욕구나 불임치료에 대한 피로도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동기에서 이타심 요인은 전체 문항 평균값이 3.3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예비입양부모들은 자신의 입양 결정이 이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입양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M=3.83),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M=3.62) ‘사회 구성원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M=3.41), 순으로 나타났다. 이타심 요인 중 ‘종교적 소명’(M=2.99)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표 7]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 1 “입양유형별로 입양동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T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비입양부모의 입양동기는 친생자녀의 유/무(각각 N=23, 53)에 따라 입양동기의 하위요인인 불임요인과 이타심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7] 친생자녀의 유/무에 따른 입양동기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분	입양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ρ
불임요인	유자녀	23	1.49	.684	-4.11	.000***
	무자녀	53	2.33	.868		
이타심요인	유자녀	23	3.92	.767	3.52	.000***
	무자녀	53	3.16	.907		

[표 7]의 T 검정 결과를 보면, 친생자녀의 유/무에 따라 예비입양부모의 입양동기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불임요인은 친생자녀가 없는 예비입양부모가 높았으나(M=2.33), 평균값이 보통이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11, p<.001$). 이타심 요인의 응답은 친생자녀가 있는 예비입양부모(M=3.92)가 친생자녀가 없는 예비입양부모(M=3.1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52, p<.001$).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동기로 이타심요인을 불임요인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친생자녀가 있는 유자녀 입양의 경우 무자녀 입양

의 경우보다 이타심요인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5) 입양사례 경험

[표 8]에서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사례 경험을 살펴보면, 예비입양부모들은 TV와 매스컴을 통해 입양 사례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23.7%(36명)가 ‘TV를 통해 일반인 가족의 입양사례를 인식’하였으며, 응답자의 23.0%(35명)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사의 입양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TV 등 대중 매체가 지니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간접 노출은 국민들이 입양사례를 경험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TV, 인터넷, 신문 등 입양홍보 광고를 통해 입양을 인식하였다’는 답변이 10.5%, ‘주요 일간지 입양사례 특집 기사를 통해 입양을 인식하였다’는 답변이 2.6%를 차지하였다. 한편, 최근 공개입양가족의 증가로 입양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표 8]에서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사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직계 및 확대가족에서 입양사례가 있는 경우가 11.2%에 달하였고, 주변이웃·친구 가족에 입양사례가 있다는 응답자가 21.7%에 달하였다.

[표 8] 입양사례 경험 유형

N =77

항목		N*	퍼센트	N**	퍼센트	입양 경험 강도
입양 사례 경험	직계·확대 가족 내 공개입양 사례	9	5.9	9	11.7	직접적 강한 노출
	직계·확대 가족 내 비밀입양 사례	8	5.3	7	9.1	
	주변이웃·친구 가정 내 공개입양 사례	21	13.8	16	20.8	
	주변이웃·친구 가정 내 비밀입양 사례	12	7.9	10	13.0	
	기타 (이모님이 가정위탁모 활동)	1	0.7	1	1.3	
	합계		33.6	43	55.8	
	tv 대중매체 속 일반가족 입양 사례	36	23.7	21	27.3	간접적 약한 노출
	tv 대중매체 속 연예인의 입양 사례	35	23.0	2	2.6	
	주요 일간지 입양 사례 특집기사	4	2.6	-		
	입양 홍보 광고(tv, 인터넷, 신문)	16	10.5	3	3.9	
	합계		59.8	26	33.8	
	없다	8	5.3	8	10.4	노출경험 없음
	기타	2	1.3	-	-	
	합계	152	100	77	100	

주: * 다중응답문항임

** 예비입양부모가 경험한 입양사례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가 경험한 입양사례 중에서 가장 강한 노출 경험을 파악하여 빈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표 8]에서는 입양사례 경험을 직접적 강한 노출과 간접적 약한 노출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예비입양부모의 55.8%가 직계 및 확대 가족 또는 주변 이웃 및 친구 가족에서 입양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여 직접적인 강한 노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TV 나 대중매체 또는 입양 홍보 광고를 통해 입양을 경험하여 간접적인 약한 노출 경험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8%였으며, 입양에 대한 노출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0.4% 이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대도시 일반인의 입양 노출경험이 2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노출경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설 “입양사례 경험유형에 따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9]를 보면, 예비입양부모들은 자신이 경험한 입양사례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4.09). 그런데 예비입양부모들은 자신이 경험한 입양사례 유형에 따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직계·확대가족 내 공개/비밀 입양사례 경험(M=4.53), 주변 이웃·친구가정 내 공개/비밀 입양사례 경험(M=4.12), 매스컴 등 간접사례 경험(M=3.81) 순서로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사례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사례 경험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다($p < .01$).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사례에 직접적인 강한 노출을 경험한 경우 자신의 입양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9] 입양사례 경험유형에 따른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차이분석

입양사례 경험유형 구분	입양사례에 대한 긍정적 인식	
	M	SD
직계, 확대가족 내 공개/비밀 입양사례 경험	4.53	.717
주변 이웃, 친구가정 내 공개/비밀 입양사례 경험	4.08	.845
매스컴 등을 통한 간접적 입양사례 경험	3.81	.402
합 계	4.09	.722
F	5.871	
p	.005**	

N=69*

* $p < .05$, ** $p < .01$, *** $p < .001$

주: * 입양사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8명을 제외하여 69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5. 결론: 요약과 제언

이 연구는 예비입양부모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입양부모의 일반적 특성, 입양태도, 입양저해요인, 입양동기, 입양사례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연령은 3~40대가 90.9%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60.5%가 결혼 10년차 미만이었으며, 기독교가 종교인 응답자가 57.1%로 조사되었다. 둘째, 전체 응답자 중 77.9%는 최초 입양이었으며 그 중 유자녀 입양이 22.1%, 무자녀 입양이 55.8%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22.1%가 재 입양가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양결정과 진행과정에서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자신이 입양의 제안자이며 주도적으로 입양과정을 진행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의 80.5%가 공개 입양을, 73.2%가 여아 입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 중 75%가 자녀의 뿌리 찾기 과정을 도울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1.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뿌리 찾기 도움 의사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여섯째, 입양 결정과정에서 저해요인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선입견, 자녀의 부적응,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우려감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자신의 입양 동기를 불임과 이타심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친생 자녀의 유무 즉, 유자녀 입양과 무자녀 입양의 경우 입양동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자녀 입양의 경우 입양을 좀 더 이타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덟째, 응답자의 55.8%가 직계 및 확대 가족 또는 주변 이웃 및 친구 가족에서 입양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여 입양에 대한 강한 노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계 및 확대가족에 입양사례가 있는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진한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만 16세 전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과 의료비(의료급여 1종 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예비입양부모에게 경제적인 조건은 입양저해요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양육비의 지원이 입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입양특례법상 양부모가 될 자격조건은 입양자녀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조사결과도 예비입양부모의 58.4%가 4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16세 이후에 자녀 교육과 주택 마련 등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양부모들이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때 퇴직 등의 사유로 경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입양가정에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등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입양편견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입양부모들이 입양 결정 과정에서 입양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편견이었고 다음으로 부모 역할과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우려였다.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전통과 비밀입양이 낡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공개입양이 입양원칙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입양가족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많아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비입양부모의 입양동기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불임요인보다 이타심요인이 입양동기에서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친자녀가 있는 양부모들은 친자녀가 없는 양부모들에 비하여 입양동기에서 이타심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로부터 요보호아동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예비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입양부모의 이타적 행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이 사회문화적 가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입양교육이 학교의 신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입양이 창의적 출산이자 창의적 가족형성 방법이라는 것을 교육하여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초·중·고등학교 청소년기부터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입양부모의 심리상황을 도울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행 입양절차 상 심리검사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이는 입양 허가제의 시행에 따른 법원 심리 절차의 검토 서류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올바른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은 아이를 둔 모든 부모가 경험하는 두려움일 수 있으나, 입양부모의 특수성, 특히 불임을 통한 심리적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입양 진행절차의 핵심 과정으로 심리 상담과정을 추가하여야 한다. 입양삼자(입양자녀, 친생부모, 입양부모)중 입양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욕구가 해결되는 것은 입양부모이다. 그러나 입양부모로서 입양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와 입양자녀의 삶을 위해 노력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부모의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양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013년 헤이그입양협약 서명 이후 정부는 협약 비준에 맞춰 입양관련 입법 및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입양 과정과 입양 후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긍정적인 입양사례 경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양부모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입양사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양사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설 검정을 통해 입양사례 경험유형에 따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계·확대가족 내 공개 또는 비밀입양 사례를 경험한 예비입양부모들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주변 이웃과 친구들의 공개 또는 비밀입양을 경험한 예비입양부모들이 높았고, 매스컴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양사례를 경험한 예비입양부모들이 긍정적 인식이 가

장 낮았다. 입양사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입양 사례를 확대시킴으로 입양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예비입양부모들의 입양결정 과정과 입양태도 그리고 입양동기를 파악함으로써 입양기관 또는 실무자들이 입양상담 시 내담자의 입양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78명이라는 비교적 소수의 예비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를 준거로 삼아 조사대상 규모를 가능한 확대하고 입양부모들의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사례 경험을 유형화하고 경험의 강도를 구분하였으나, 입양사례 경험이 입양결정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입양사례 경험이 입양부모의 입양결정에 미친 영향을 다루기 위한 입양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예비입양부모들의 개인적인 입양사례 경험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각각의 입양사례 경험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태인 (2014). 해외입양인 생모(生母)의 모성정체성 구성에 관한 생애사 연구. *가족과 문화*, 26(3), 105-144.
- 고영희 (2005). 불교 신도의 입양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연 (2011). 국제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혜연·임영식 (2005).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미래청소년학회지*, 2(2), 5-16.
- 구미향 (2006). 공개입양가정의 부모가 경험하는 갈등의 유형과 특성 분석. *아동학회지*, 27(3), 117-133.
- 권지성 (2005). 국내 공개입양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학술대회 발표논문.
- 권지성 (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10). 입양가족의 개방입양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5-33.
- 권지성·안재진 (2010).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41(4), 369-393.
- 김경아 (2002). 우리나라에서 공개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김효진·전진아·안재진·김유경·신은정·임성은 (2013).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3013-74.
- 김영화 (2003). 국내입양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나 (2004). 국내입양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홀트사회복지연구*, 6, 67-103.
- 김의남 (2005).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2006). 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중단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공개입양 가정의 입양현황과 자조집단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61-80.
- 김효진·이재연 (2010).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4, 127-153.
- 박경련 (2007). 한국사회에서 입양부모들의 입양공개 경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2009). 국내 공개입양가정의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 행동과 입양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3), 69-98.
- 박영호 (2016).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동기와 입양노출 경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선 (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4, 127-156.
- _____ (1999). 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의 입양실천현장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5, 147-168.

- _____ (2002). 입양인의 뿌리찾기와 알권리. *이화사회복지연구*, 1, 101-120.
- 배태순 (2013). *입양 성공의 요건*. 경남대학교 출판부.
- 변용찬 외 (1999).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9~2016 요보호 아동현황보고. 입양 통계.
- 서경숙 (2003). *전라북도 주민의 입양에 대한 태도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란숙 (2007). *국내입양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진 (2008). *국내입양가족의 공개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38(3), 271-300.
- 안재진·변미희·권지성·최운선 (2015). *입양모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이 양육역량을 매개로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3), 19-34.
- 양점도·김호연 (1998). *국내 입양가정의 사후관리 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4(1), 47-61.
- 위여경 (2011). *해외입양인의 귀향과 친부모 만남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선 (2002). *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수행 자신감, 가족적응력 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갑숙·손진현 (2008).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12), 357-365.
- 이기연 (1996).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2001).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4, 114-44.
- _____ (200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논점과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1(1), 63-74.
- 이민영 (2003). *예비부모대상 입양에 대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설아 (2013). *유자녀입양모의 입양동기에 관한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 (2006). *한국인의 해외 입양인에 대한 인식 조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02). *입양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란 (2005). *국내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용주 (2011). *한국인의 입양인식과 입양정책의 과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1). *연장입양가족의 적응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주 양육자인 입양모 입장에서*. *사회복지연구*, 42(1), 399-432.
- 정해린, 안은미, 최혜림, 정익중 (2012).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의 이미지*. *한국아동복지학*, 39.

69-92.

- 조혜정 (2011). 기독교대학생들의 입양 및 미혼모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 개정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31, 163-184.
- 진경재 (2006). 국내입양에 대한 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인식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논문.
- 통계청. 한국의 국내·외 입양 현황(2001-2016).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08&stts_cd=270801&freq=Y
- 한종민 (2003).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 (1974). 국내입양사업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양자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순혜·박미정 (2007). 국민의 입양인식과 입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4(1), 73-95.
-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Watson, K. W. (1988). Open adoption: defining the terms and psychological issues: the case for open adoption, Public Welfare, 44(2), 26-28.
- Wolti, K., K. Malm (2010). Exploring motivations to adopt. Adoption Quarterly, 13(3), 185-208.

◀ Abstract ▶

An Exploratory Study on Adoptive Attitude, Motivation, and Adoptive Case Experience of Pre-adoptive Parents

Young Ho Park* · Dong-Myeon Shin**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pre-adoptive parents in order to investigate adoption type, adoption attitude, adoption inhibition factor, adoption case experience, and motivation for adoption. The hypothesis 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adoption motiv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adoption an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adoption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adoption case. First, 77.9% of the respondents were initial adoption families, of which 22.1% were parents with children and 55.8% were without children. Also, 22.1% of respondents were re-adoption families. Second, they recognized that their will was important in the process of adoption decision, and that they themselves were proposers of adoption and were leading adoption. Third, 80.5% of respondents preferred open adoption and 73.2% preferred female adoption. Fourth, they recognized socially negative prejudices about adoption, maladjustment of their children, and concerns about parental role as a factor inhibiting adoption. Fifth,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ir motivation for adoption as a result of infertility and altruism, and the motives for adoption differ according to the type of adoption(adoption with birth child and adoption without birth child). Sixth, 55.8%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ve adopted cases from the immediate family and extended family members or their neighbors and friends' families. Pre-adoptive parents with adoptive cases of direct and extended family members were more positive about adoption.

Considering the high age of adoptive parent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restricting economic support for adopted children up to age 16 but also supporting college tui-

*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Civic Engagement, Kyung Hee University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tion and housing costs. Given the high degree of altruism in adoptive motivation, a social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o recognize adoption as altruistic behavior.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y strengthening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process for adoptive parents and providing post-service. Finally, positive adoption cases should be expanded and introduced through TV mass media in order to spread the experience of positive adoption cases.

Key Words: adoption, domestic adoption, adoption attitude, motivation for adoption, pre-adoptive parent